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소 청 절 차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정세균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소청당사자(소청인, 피소청인)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·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,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25. ~ 11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① 위원회는 위원, 법 및 이 영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(이하 이 항에서 “출석자”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
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
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
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
는 경우 소청인,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·
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① 위원회는 위원,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이 항에서 “출석자”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, 피해자,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, 회의 내용 ·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648